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81호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 장관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궤도시설 안전검사 기준의 개선에 따라 현장에서 실시하는 점검·정비요령의 점검주기를 개선하고, 와이어로프 측정지점 기준을 완화함

2. 주요내용

가. 설비의 중요도에 따라 점검주기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점검이 실시되도록 궤도시설 점검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2)

나. 궤도시설 안전검사요령의 와이어로프 측정방법 개선에 맞춰 현장에서 실시하는 점검·정비요령에도 측정지점을 완화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동) 602호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4726(팩스 044-201-5650)

4. 기타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